

[4명에게 20억 손해배상책임 물은 법원, 상고장 접수에만 1528만원]
**현대차 비정규직·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11일 오전10시, 대법원 앞

○ 주관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복적 손해배상청구 피해자 발언 -----최병승 조합원(현대자동차)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상고비용 모금운동 제안 배경 -----
조승현 교수(방송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당노동행위·권리남용수단으로 변질된 손배 소송의 실태와 제도개선 요구
----- 김태욱 변호사(금속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위배되는 손해배상·가압류 -----
박래군 운영위원(손잡고, 인권재단사람)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1. 문제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3나9475, 재판장 조용현)

지난 8월 24일,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현대차비정규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지원한 4명의 노동자에게 현대차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요지

“피고 엄길정, 박점규, 최병승, 김형기는, 이 사건 청구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거액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원고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지만 피고들에게 있어서는 수십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위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매출이익의 손해를 모두 제외하고 손해의 일부분인 고정비만을 전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법원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2010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파업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로 일하다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2005년 해고된 최병승 조합원 사건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을 선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2004년부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주장해왔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의 정당성이 확인되었고, 대법원 판결 이후 지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사측과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지회의 교섭요구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조합원이 소속된 사내하청업체의 폐업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격분한 조합원들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37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불법파업 정규직화 투쟁에 대해서만 현대차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374억 원을 넘는다. 이후 현대차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교섭과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자, 사측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거나 지회를 탈퇴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주는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하려는 조합원들을 압박해 갔다.

결국 끝까지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지 않는 조합원과 2012년 8월 2일 이전 해고 조합원으로 2년 이상 노동자가 못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조합원,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투쟁에 연대한 현대자동차 정규직노동자, 상급단체(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간부와 조합원만 손해배상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지회 및 노동자 4명(지회 조합원1명, 정규직 조합원 3명)에 대해 90억 원의 손해배상 인용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1.25. 2014나1119), 최병승 외 3명에 대해 20억 원의 손해배상 인용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8.24. 2013나9475)이 나온 것이다.

■ 비정규지회 파업을 지원·연대한 노동자에게 122억 손해배상 공동책임 인정

이번 판결의 피고인 4명을 살펴보면,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이자 2010년 파업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이었던 최병승, 당시 금속노조 단체교섭국장이었던 박점규,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체인력 저지를 함께 하는 등 지원했던 정규직 현장간부(엄길정)와 비정규직 해고자(김형기)가 포함되어 있다. 말하자면 현대차의 사내하청 활용이 파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당사자이자 상급단체 간부로서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들과, 현대차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면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옹호한 정규직 노조의 간부에 대해서만, 현대차가 끝까지 고통을 주겠다는 의지가 법원에서 인용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총 8건 중 CTS 25일 점거파업(아래 도표 1, 4, 6, 7 사건)과 희망버스(아래 도표 8번 사건) 관련 손해소송에 대해서는 끝까지 손해소의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두 사건 관련 소송의 최종 인용자 대부분이 정규직 노동자와 상급단체 간부들이고, 인용금액만 122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현대차가 연대자에 대한 소송취하를 하지 않는 것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와 정규직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연대(지원) 투쟁을 가로막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 2010년 파업 관련 손해 재판 현황

순번	유형	소제기일	당사자/사건번호	사건명	사건내용	청구취지/최종결과	최초 대상인원	최종 인용인원 및 손해 확정액
1	민사	2011.8.29. 2014.1.27.	울산지법 제5 민사부 2010가합8156 부산고법 민사1부 2014나1119	손해 배상	2010년 cts 점거 파업	90억	비정규직지회 외 26명	▶ 비정규직지회 외 4명(조합원1, 정규직3) ▶ 90억 손해 확정
2	민사	2011.8.29. 2014.1.20.	울산지법 제5 민사부 2010가합8200 부산고법 민사1부 2014나819	손해 배상	2010.11.17. 3공장 파업	10억	28명	▶ 2명(조합원 2) ▶ 37,498,679원 손해 확정
3	민사	2011.8.9. 2014.1.9.	울산지법 제4 민사부 2010가합8224 부산고법 민사2부 2014나536	손해 배상	2010.11.15.- 11.18.자 2공장 파업	10억	13명	▶ 0명 ▶ 전원취하로 0원
4	민사	2011.8.9. 2013.11.27	울산지법 제4 민사부 2010가합8446 부산고법 민사2부 2013나9475	손해 배상	2010년 cts 점거 파업	20억	29명	▶ 4명 (조합원1, 금속2, 정규직1) ▶ 상고 중
5	민사	2011.8.9. 2013.11.20	울산지법 제4 민사부 2010가합8613 부산고법 민사2부 2013나9246	손해 배상	2010.11.15. 시트공장 파업	2억	6명	▶ 0명 ▶ 전원취하로 0원
6	민사	2010.12.7.	울산지법 제5 민사부 2010가합8552 부산고법 민사5부 2014나8394	손해 배상	2010년 cts 점거 파업	70억/80억 확정	323명	▶ 1명(조합원1) ▶ 80억 손해 확정
7	민사	2013.11.12	울산지법 제11민사부 2013가합8096	손해 배상	2010년 cts 점거 파업	1,153,862, 749원	47명	▶ 2명(조합원1, 민주노총1) ▶ 1,026,570,841원 손해 확정
8	민사	2013.7.23	울산 제12민사부 2013가합5202	손해 배상	2013년 7월 20일 희망버스	2억	10명	▶ 2명(정규직1, 민주노총1) ▶ 항소 중

보복적 권리남용으로 손해배상 사례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손해 전보의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 와해, 약화라는 부당노동행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교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어, 교섭이 마무리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역시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다른 목적으로 남용한 것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그 남용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소송의 원고가 되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자체의 와해, 약화라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공격적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빌미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수십억 손해배상을 근거로 해서 자사의 ‘불법파견’을 무마하거나, ‘근로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도록 협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기도 하며, ▲노조해산 및 해고자복직투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KEC, 유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입니다. **KEC**의 경우에는 회사가 선무 방 송으로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외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전하고 다녔을 뿐 아니라 나중에 발견된 회사 내부 문건(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에 의하면 “노동조합 압박 전략” 차원에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유성기업**의 경우에도 창조컨설팅과의 내부 회의자료를 보면 “금속노조 유성지회에서 기업노조로 전향한 자가 저 조”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금속노조 유성지회 핵심 조합원에 대하여 중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쟁의행위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현대 자동차는 집단소송 및 그 항소심 절차에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근속과 임금을 상당히 포기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회사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피고(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소송을 유지하고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피고수가 줄어든다고 하여 인용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법리상 노동조합과 그 간부들의 책임은 소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 책임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 관계에서는 피고 중 1명만 남아있어도 원고는 그 1명에게 모든 액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 법리는 원래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특정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법리였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노조법 자체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 범위가 현재보다 크게 넓어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물적, 인적 대상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자들은 회계법인 감정서를 근거로 제한없이 직접, 간접적인 손해를 주장하면 법원은 그 상당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 현실인데 손해배상 범위를 직접 손해로 한정해야 하며, 경감청구 및 책임 제한 제도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법원은 파업권이 헌법상 기본권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론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기본권 행사가 자신의 삶과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걱정해야 한다면 이는 더 이상 권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그 걱정이 단지 걱정이 아니라 대부분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중대한 효과에 우려를 표한 이유를 명심하고 위에서 말한 제도적 개선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한국의 사내하청 노동기본권 관련 권고 Case No.2602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사건)

① 사건의 개요

■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의 제소의 요지:**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 전주 공장 등의 “불법 파견” 노동자, 즉 위장된 고용관계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s) 속에 있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법적 보호를 실제적으로 부정당한 채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 보호망 밖으로 방치되었다. 1) 노동조합 건설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반노조적 차별, 특히 해고 조치들, 2) 사용자들의 일관되게 교섭 거부 및 그 결과로서 이들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어떤 노조도 단체협약을 성사시키지 못해왔음, 3) 쟁의행위에 대해 해고와 구속수감, “업무 방해”를 들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4) 해고된 노조 간부들이 집회를 열거나, 대표 권한 행사를 위해 회사 구내로 재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방해”를 들어 신체적 공격을 자행하고 법원의 출입 금지 가처분을 내리거나 구속수감하는 행위.

② ILO권고의 요지¹⁾

■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권고

-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 울산과 전주 공장의 하청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들 노동자들이 “제3자” 즉 원청 회사에 맞서는 노동 쟁의를 했다는 단지 그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들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급여 손실 없이 원직복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가 “업무 방해” 조항에 기반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 철회,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탈퇴, 잔업 거부 철회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해소를 제기한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1)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Report No.350, 2008; Report No.355, 2009; Report No. 359, 2011; Report No.363, 2012; Report No.374, 2015.

- 위원회는, 향후 해고된 노조 간부들이 사업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받을 때, 법원이 이들 노동자대표들이 해당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에 방해함이 없이 자신들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

-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 공장에서 집회 동안 노조 조합원들에게 자행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 관련 제소 내용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제소 내용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과,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에 대해 희생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 위원회는 폭력과 형사처벌, 부적절하게 무거운 벌금형이, 특히 대화와 단체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향후 비폭력적 행위들에 있어서 “업무 방해” 조항을 적용하기 보다는 신뢰와 평화로운 노사관계 분위기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한다.

-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해당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바,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하도급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제에는 선행적으로 결정된 바의 대화를 위한 합의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노조 권리의 행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내하청”을 활용한다는 지속되는 혐의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해, 관련 노조와 하청/파견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하청/파견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사실상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미리 결정된 합의된 대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구조를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 정부가 본 제소의 대상이 된 금속산업에서의 하청 및 파견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도 밝히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다시한번 정부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특히 해당 사업장의 하청/파견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생활 및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섭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20억?**

상고비용이 없어
빛을 떠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게 법치주의의 인가요?

현대차 비정규노동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지원한 4명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4명은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해 온 연대자, 함께 싸운 정규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비정규노동자에게 부과한 손해배상액이 200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지대)이 없어 재판을 더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20억 원 선고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서는 인지대만 1,500만 원 넘게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막는 손배,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상고비용(인지대 약 1,500만원) 마련에 힘을 보태요
원칙과 의리를 지킨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모금계좌 국민은행 533302-01-358495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
신한은행 100-032-129829 예금주: 손잡고

모금시한 2017년 9월 10일(일)까지

모금 참여자

1. 모금 결과

- 1) 모금 내역 : 192건, 총 18,148,227원(9,810,000/비없세 + 8,338,227/손잡고)
- 2) 최종 모금 기간 : 11일(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 3) 모금 경과

소송당사자 4인은 부산고법의 20억원 배상판결에 좌절하지 않고 ‘상고’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이 넘는 인지대 등 상고비용을 보름안에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고까지 약 2주를 앞두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상고비용이 없어 상고를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모금 제안을 했고, 시민단체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와 ‘손잡고’가 참여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 적지 않은 금액을 모금해야 했기에 마감시일 직전인 9월 10일까지 최대한 모금을 받고자 계획했습니다. 처음 걱정과 달리 뜻밖에 많은 시민들이 사안에 공감하고 모금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은 모금뿐 아니라 직접 SNS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보면 당사자들의 삶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불법 반인권적인 일에 대해 법적인 대응조치 엄두를 낼 수 없도록 하려는 기업주들의 절망훈련, 포기훈련에 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도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어야 합니다(공유정옥 페이스북).”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대회에 참가했던 충남대학교 법전원 서범진, 고희준, 이수열입니다. 저희가 지난 대회에서 좋은 변론을 펼친 점이 있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싸우는 노동자들로 부터 배우려 노력하고, 또 노동자들의 편에서 법을 공부하려 했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저희가 이번에 받게 된 상금을 개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트에 적힌 모금계좌로 적으나마 연대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서범진).”

“수천만원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면 수십억원의 배상액을 노동자 개인이 짊어져야 합니다(문성근 @actormoon).”

이 외에도 많은 시민 여러분이 묵묵히 마음을 담아 주셨고, 경향신문, 매일노동뉴스,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언론의 발빠른 소식 전달도 시민들의 공감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참해주신 시민여러분의 십시일반으로 긴급 상고비용을 마련하고 모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마음을 모아준 많은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참가자 명단(각 가나다순)

1) 개인(178명, 익명 포함)

가은경, 강근도, 강민정, 강화수, 고영남, 공문식, 공유정옥, 권민성, 권주용, 권차량, 권혜반,

김경수, 김경창, 김대현, 김두나, 김미나, 김미려, 김병국, 김상희, 김서중, 김성재, 김성희, 김소진, 김수연, 김영주, 김예준, 김용대, 김용주, 김원규, 김인호, 김재완, 김정숙, 김정은, 김종민, 김종서, 김준규, 김차곤, 김창조, 김한아, 김해인, 김현경, 김혜경, 김혜진, 김호정, 김효정, 남우근, 류동연, 문금지, 문기주, 문병효, 문성근, 문정주, 문지선, 문현, 민경란, 민변노동위원회, 박근영, 박봉정숙, 박상옥, 박세롬, 박성우, 박재준, 박재현, 박지현, 박찬희, 박채은, 박철, 박희병, 박희영, 배예주, 배춘환, 백낙청, 변창기, 서득제, 서범진(고혁준, 이수열), 서용순, 서찬욱, 손은우, 송기훈, 송성훈, 신민호, 신순영, 신진영, 안진걸, 양승엽, 양현, 엄진령, 오세연, 우지연, 우희수, 울산YP, 유수경, 유수경, 윤애림, 윤원필, 윤윤기, 윤정, 윤종욱, 윤혜정, 은연지, 이건민, 이기대, 이명순, 이명재, 이민숙, 이부영, 이상기, 이서영, 이성훈, 이양구, 이용석, 이원우, 이은희, 이재혁, 이정아, 이호중, 이효상, 이흥희, 임우재, 임정민, 임정선, 임호풍, 장문석, 장수국, 전창민, 전한열, 전해원, 정나위, 정대성, 정우석, 정찬미, 정홍조, 정희진, 조경란, 조경배, 조돈문, 조명숙, 조석현, 조승현, 조영호, 조우영, 조은실, 조은혜, 조정우, 조지혜, 채효정, 최관호, 최도은, 최선화, 최영순, 최용규, 최의왕, 최은실, 최진이, 최창민, 최한미, 최홍엽, 최효성, 하대용, 하미란, 하해성, 한상덕, 허진남, 홍재관, 홍정수, 황명식, 20억손배, None, 건투를 빕니다, 모금, 상고모금, 상고포기마세요, 손배소가압류없, 손잡고후원, 연대, 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카페여행자, 희망을 노래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요

2) 단체(14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속노조사무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법률원, 금속노조법률원,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세종호텔노조, 아산사내하청, 올리베따노수녀회, 인권위분회, 전교조서울중등관동, 제주마음이, 진보교육연구소, 청주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판매연대지회, 현대차 공동행동

3. 모금사용

보내주신 모금액은 모금종료 후 전액을 변론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안'으로 송금했습니다. 금액은 모금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인지대 등 상고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모금 사용 후 남은 금액(현 모금액에서 이 사건 인지대와 송달료 액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금참여자의 의사를 확인해 비슷하게 법률비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하이디스지회의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변호인단

강영구, 김동창, 김동현, 김두현, 김병욱, 김세희, 김성진, 김영관, 김유정, 김재왕,
김태욱, 김형규, 권두섭, 권영국, 류민희, 류하경, 박다혜, 신선아, 신인수, 신지현,
송영섭, 서선영, 이 석, 이선민, 이지영, 이종윤, 이종희, 이환춘, 우지연, 오빛나라,
윤지영, 장석대, 장석우, 정기호, 정준영, 정병욱, 정소연, 조세화, 조연민, 조영관,
조영신, 조혜진, 조혜인, 조현주, 차승현, 최종연, 최석균, 최현정, 탁선호, 한가람

지난 8월24일 부산고등법원(2013나9475)은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지원한 4명의 노동자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500만원이 넘는 상고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상고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판결문은 최소한의 균형감각마저 잃었다. “회사의 불법에 저항하고, 기본권을 요구하려면 수백억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회사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잔인한 판결문. 노동자들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압류에 대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포기하는 것 밖에 없었다.

이번 판결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린 반인권·반헌법 사건이다. 첫째 이번 판결을 통해 재벌대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재갈을 물렸다. 둘째, 법원은 손해배상의 대상을 노조 지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과 연대자까지 확대했다, 셋째,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업무방해를 방조했다는 죄목까지 씌웠다.

한 쪽에서는 대통령이 노조조직를 재고와 노동3권 보장을 말하고, 국제노동기구(ILO)는 10여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에 대한 폐지나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벌과 재판부는 여전히 노동3권을 압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해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번 20억 손배 사건이다.

사건이 언론에 제보된 후,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연대를 보내왔다. 이에 법률가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차별적인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것이다. 많은 투쟁사업장에서 손해배상과 압류가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노동3권이 돈에 의해 질식당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7.9.1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